

**부산광역시체육회관
관리 규정**

● 부산광역시체육회관 관리 규정

제정 2016년 06월 15일

개정 2017년 07월 24일

개정 2020년 03월 31일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산광역시 체육회관(이하 ‘체육회관’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주자”라 함은 사무실 등 용도실을 장기 사용하기 위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자 및 그 구성원을 말한다.
2. “사용자”라 함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허가를 받은 자로서 운동경기,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3. “관리자”라 함은 체육회관을 수탁한 부산광역시체육회장(이하 “체육회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4. “시설물”이라 함은 실내훈련장, 헬스장, 회원종목단체 사무실, 회의실 등 체육회관의 모든 시설을 말하며, 부대시설이라 함은 그에 부수된 필요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5. “시설물의 사용”이라 함은 제2조 4호의 시설물을 본래 목적대로 사용함을 말한다.

제3조(위치) 체육회관의 위치는 부산광역시 동래구 사직로 77에 둔다

제4조(기능) 부산광역시체육회관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부산광역시체육회 및 정회원종목단체 사무실 제공
2. 우수선수 발굴·육성 등 경기력향상을 위한 훈련시설 제공
3. 시민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 시설 제공
4. 부산국제경기대회 기념자료 전시 및 기념관 홍보사업
5. 기타 체육회장이 체육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제5조(입주 및 사용허가)** ① 시설물에 입주 또는 사용을 하고자 하는 자는 회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같다.
- ② 제1항의 허가신청에 있어 시설물을 전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용내역을 명시하여야 한다
- ③ 시설물에 입주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제1호 서식에 의한 입주 신청서를 입주 15일전까지 체육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입주허가는 체육행정발전과 경기력향상의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체육회장이 입주를 허가 하고, 별표 제2호 서식에 의한 입주허가서를 입주자에게 교부한다. 다만, 입주허가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입주허가를 신청하여 체육회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⑤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제1호 서식에 의한 사용허가 신청서를 사용일 7일전 까지 체육회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 목적이 긴급을 요할때는 예외로 하며 체육회장이 시설물 사용허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별표 제2호 서식에 의한 사용허가서를 사용자에게 교부한다.

제6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1. 부산광역시 및 부산광역시체육회가 주최 · 주관하는 행사
2. 전국(소년, 동계)체육대회 ·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의 예선대회
3. 전국(소년, 동계)체육대회 ·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을 대비한 훈련
4. 부산시광역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주최 · 주관 경기대회
5. 기타 체육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회 및 행사
6. 전국장애인체육대회를 대비훈련 및 예선대회
7. 기타

제7조(입주자의 의무) 입주자는 체육회관이 공공건물임을 감안하여 다음 각 호의 해당사항을 준수하고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 입주자는 시설물의 화재, 도난방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2. 입주자는 고의 또는 과실 등으로 인하여 시설물 및 부대시설이 파손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입주자는 위생, 환경정리 등 건물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8조(입주자 및 사용자 준수사항) 입주자 및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준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체육회관의 이용시간은 06:00 부터 22:00 까지로 한다.
2. 입주자가 야간근무 및 시간외 근무를 필요로 할 시에는 사전에 관리자에게 통보한 후 근무하여야 한다.
3. 입주자는 시설물의 원상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입주자는 시설물을 이용하여 수의사업을 할 수 없다.
5. 입주자는 시설물을 이용하여 각종 회원회비 징수 등 금품수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시설물 사용료를 징수할 수 없다.
6. 입주자가 시설물을 본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거나 관리를 태만히 하였을 시는 그 시설물의 사용권을 타 입주자에게 부여할 수 있다.
7. 입주자는 관리자가 부과하는 수도, 광열비, 제세 등 시설유지 관리비를 지정하는 일자까지 납부 하여야 한다.
8. 체육회관 내에서는 음주, 도박, 음란 등 사행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9. 퇴근 시에는 반드시 소등하고, 화기점검을 한 후 시건장치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10. 체육회관 내에서는 전열기구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11. 승강기는 근무시간에 한하여 운행하며, 체육회의 사정에 따라 운행시간을 조절할 수 있다.
12. 실내훈련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경기 또는 행사 후 청소 및 정리정돈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13. 기타 관리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9조(이용료 등) ① 전시관 내 영상실, 회의실 또는 훈련장 등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표 3의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5조에 따라 사무실 등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이용료 등의 감면) ① 체육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별표3의 이용료 중 헬스장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
2.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1급~3급 장애인은 보호자 1명 포함)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7.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참전유공자
8.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9.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 장려지원 조례」의 적용을 받는 다자녀가정에 속하는 자

② 체육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체육회관의 이용료 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사무실 등을 사용하는 자에게는 전기, 상·하수도, 도시가스 등의 사용요금을 실비로 징수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체육회관을 이용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2. <삭제 2020.03.31>
3. 회원종목단체의 대의원총회, 이사회 및 공식행사를 위하여 회의실 등을 이용하는 경우
4. 부산광역시체육회에 등록된 선수(팀)가 훈련 또는 교육을 위하여 훈련장 등을 이용하는 경우
5. <삭제 2020.03.31>

제11조(사용자 부대설비) ① 사용자가 사용 기간 중 필요한 설비는 체육회장의 승인을 얻어 설치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설비의 설치나 철거비용은 모두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 ③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만일 원상복구를 아니한 때에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2조(사용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 될 때는 시설물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2. 시설물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3. 기타 체육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제13조(기념관입장의 거절 및 퇴장)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 자 또는 전염성질병이 있음이 확인된 자
2. 술에 만취된 자
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될 물품을 휴대한 자
4. 기념관내 질서를 문란케 하는 자
5. 기타 입장을 거절하여야 하는 사유가 있는 자

제14조(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 체육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친다고 인정될 때
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3. 시설물의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4. 체육회관내 질서유지가 심히 어려울 때
5. 기타 체육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5조(양도 또는 전대의 금지) 이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체육회장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그 허가사항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16조(위임·위탁관리) 체육회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관련 전문적인 업체 등에 위임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사용자의 책임) ① 사용자는 사고예방 및 질서유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행사 또는 경기로 인하여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는 민사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② 사용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시설물 및 부대시설을 손괴하거나 제3자로부터 손해 배상 등의 청구를 받았을 때(시설사용 허가자에 대한 청구 포함)는 사용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제18조(주차장 관리) 체육회관내 주차장에 대하여 활용여건에 따라 유료화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19조(퇴거명령) 입주자가 규정 제7조, 제8조, 제9조, 제11조, 제15조를 위반할 시는 체육회장은 퇴거를 명할 수 있다.

부 칙(2016.06.15.)

1. 이 규정은 본회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로부터 시행 한다.
2.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본회규약 및 쳐무규정과 부산광역시의 관련조례 및 국·공유 재산 관리·운영의 일반 예에 따른다.
3. 이 규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체육회관 관리 내규로 정한다.

부 칙(2017.07.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체육회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03.3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부산광역시의 승인 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

[별표 제1호]

체육회관 사용(입주) 신청서(제5조제3호 및 제5호 관련)

1. 사용시설물 및 부대시설 :
 2. 사용목적 :
 3. 임차기간 : 20 년 월 일 시 부터
 20 년 월 일 시 까지
 4. 사용내용 :

5. 사용료 :

내 용	대 실 료		부 가 세	
	냉난방비		부대시설사용료	
	합 계		계 약 금	

부산광역시체육회관 관리규정 제9조에 의거 사용신청 하오니
사용을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단체명 :
주소 :
연락처 :
대표자성명 :

부산광역시체육회장 귀하

[별표 제2호]

체육회관 사용(입주) 허가서(제5조제5호 관련)

1. 사용자(입주자) 주 소 :

단 체 명 :

대표자성명 :

2. 사용시설 및 부대시설 :

3. 사용목적 :

4. 사용기간 : 20 년 월 일 시 부터
 20 년 월 일 시 까지

5. 사용료 :

내 용	대 실 료		부 가 세	
	냉난방비		부대시설사용료	
	합 계		계 약 금	

6. 사용인원 : 명

위와 같이 체육회관 사용내용을 허가함.

20 년 월 일

부 산 광 역 시 체 육 회 장

[별표 제3호] <개정 2020.03.31>

영상실 · 회의실 및 훈련장 등의 이용료(제9조제1항 관련)

시설별	기준	체육경기	체육행사	체육행사 이외의 행사	기타
훈련장	1회	평일	40,000원	80,000원	200,000원
		토요일·공휴일	60,000원	120,000원	300,000원
헬스장	1개월	—	—	—	55,000원
회의실	1회	—	—	88,000원	—
영상실	1회	—	—	88,000원	—
비고	1. 훈련장의 1회는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2. 회의실 및 영상실의 1회는 4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3. 부속시설(전기, 냉·난방기)의 이용료는 다음과 같다. · 전기 : 기본요금 [(전기이용량/이용시간×기본요금단가×이용일수/30)] + 이용량요금 [전기이용량×요금단가] · 냉·난방료(가스사용료) - 훈련장 : 1시간당 20,000원 - 회의실 : 1시간당 5,000원 4. 헬스장을 장기 이용할 경우 3개월은 이용료의 100분의 5를, 6개월은 100분의 10을, 12개월은 100분의 15를 경감한다.				